

중국

[판례 분석]

민간 전통 조형물의 저작물성과 권리 귀속 증명

2026. 07. 01.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민간 전통 조형 요소를 소재로 한 모형 또는 장식품은 그 기본 형상이 공공영역에 속하더라도 저작자의 독자적인 선택과 배치가 구체적 표현으로 구현되면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음. 그러나 전통적 소재와의 차이가 미미하고 권리자가 원시 창작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저작권 등록증만으로는 저작권자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저작권 침해 주장도 배척될 수 있음.

1. 현황

최근 중국 저작권 분쟁에서는 전통문화 요소와 문화 창의 상품을 결합한 작품의 보호 범위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되고 있음. 전통 문양과 민간 신앙의 상징물 및 지역 공예 요소는 특정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영역에 속함. 그러나 이러한 요소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보호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님. 저작자가 기존의 전통 요소를 단순히 재현한 것이 아니라 형태와 비례, 표정과 장식, 자세의 선택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을 형성하였다면, 해당 창작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음.

반대로 전통적 소재가 이미 널리 알려진 기본 형상으로 존재하고 새로 추가된 표현이 단순하거나 기존 형상과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물성 인정이 제한됨. 또한 중국 저작권 실무에서 저작권 등록증은 권리 귀속을 추정하게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등록기관의 심사가 형식심사에 그치는 이상 확정적인 권리 발생 증명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상대방이 별도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반증을 제시하는 경우 권리 주장을 하는 당사자는 원본과 설계 초안, 창작 과정 자료, 권리 취득 계약 등으로 자신의 창작 사실을 추가로 증명해야 함.

본문에서는 사자 형상의 민간 신앙 요소인 '풍사야(风狮爷)'를 소재로 창작된 작품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분쟁을 통하여 민간 전통 조형물을 기초로 한 모형 작품의 독창성 판단과 저작권자 증명 책임의 관계를 살펴봄.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5)川1802知民初36号	
	2심	(2026)川18知民终1号	
관할 법원	1심	쓰촨성 야안시 위청구 인민법원(四川省雅安市雨城区人民法院)	
	2심	쓰촨성 야안시 중급인민법원(四川省雅安市中级人民法院)	
당사자	A 씨		1심: 원고 2심: 상소인
	B 점포, C 회사, D 상무부, E 회사		1심: 피고 2심: 피상소인
핵심 쟁점	1심	1. A 씨가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는 작품의 저작권자인지 여부 2. B 점포, C 회사, D 상무부, E 회사가 A 씨가 권리를 주장하는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2심	1. A 씨가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는 작품의 저작권자인지 여부 2. B 점포, C 회사, D 상무부, E 회사가 A 씨가 권리를 주장하는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판결 결과	1심	1. A 씨가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는 작품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2. B 점포, C 회사, D 상무부, E 회사는 A 씨가 권리를 주장하는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	
	2심	상소기각, 원심유지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법(著作权法) 제2조, 제3조 ·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7조 		
최종 판결일	2026년 4월 10일		

(1) 사건 개요

A 씨는 사자 형상의 민간 신앙 요소인 ‘풍샤야’를 소재로 한 모형 작품(이하 “사건 모형”이라 함)을 창작하여 2016년 10월 6일부터 X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당 모형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음. 2019년 7월 30일 A 씨는 푸젠성 저작권국에 사건 모형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였고 그 창작 시점을 2016년 4월 30일로 신고하였음.

한편 D 상무부는 X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하여 중국 전통 사자 모형 장식품(이하 "분쟁 장식품"이라 함)을 판매하였음. 분쟁 장식품은 Y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 분쟁 장식품을 공급하는 E 회사와 B 점포에서 구매한 것이고 또한 량(梁) 모씨는 C 회사의 대표이자 B 점포의 경영자였으며, B 점포는 C 회사가 Y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 개설한 온라인 스토어임. A 씨는 분쟁 장식품이 사건 모형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판매자인 D 상무부, 공급자로 지목된 E 회사와 B 점포 그리고 B 점포와 관련된 C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2) 핵심 쟁점

본 안건에서 A 씨는 분쟁 장식품이 사건 모형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피고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B 점포와 C 회사는 사건 모형과 유사한 작품이 외부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사실, 사건 모형과 동일한 소재로 창작된 "즐거운 아기사자(开心的小狮子)"가 2022년 저작권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건 모형의 권리 귀속 자체에 반증이 존재한다고 항변하였음.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본 안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음.

- ① A 씨가 사건 모형의 저작권자인지 여부
- ② D 상무부, E 회사, B 점포, C 회사가 A 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1) 저작권 귀속 판단

① 1심 법원의 판단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중국 공민,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작품은 발표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을 향유함. 본 안건에서 A 씨는 2019년 7월 30일 사건 모형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마쳤음. 그러나 저작권 등록기관의 등록은 단지 형식심사에 한정되며 실질 심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해당 저작권 등록증은 권리 귀속에 관한 초보적 증명력을 가지나 등록기관의 심사가 형식심사에 그치는 이상 등록 자체가 권리 확정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피고들이 권리 귀속에 관한 반증을 제출한 경우 A 씨는 원시 설계자료, 창작 초안, 창작 과정 자료 등으로 자신이 실제 창작자임을 추가로 증명해야 함.

1심 심리 과정에서 A 씨는 사건 모형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B 점포와 C 회사는 두 종류의 반증을 제출하였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a. 첫 번째 반증

- 해당 작품이 제3자 황(黄) 모씨가 2016년 11월 "2016 환저우 해상 실크로드 문화 파생상품 창의 디자인대회(2016泉州海丝文化衍生品创意设计大赛)"에서 사건 모형과 유사한 작품으로 은상을 수상한 사실을 입증하는 해당 대회의 결과 공지 및 수상자 명단
- 사건 모형이 은상을 수상했다는 것을 보도한 관련 웹사이트 및 신문 보도 자료
- 황 모씨의 해당 대회 상장 증서 및 해당 대회 관련 홍보 자료

b. 두 번째 반증

“즐거운 아기사자(开心的小狮子)”는 량(梁) 모씨, 린(林) 모씨에 의해 창작되어 2022년 9월 6일 푸젠성 저작권국에서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이 같은 B 점포와 C 회사의 반증을 고려하면 A 씨가 주장하는 사건 모형에는 권리 충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저작권에 대한 권리 충돌이 존재하는 경우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7조는 “당사자가 제출한 저작권 관련 초안, 원본, 합법 출판물, 저작권 등록증, 인증기관 증명서, 권리취득 계약 등은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작품 또는 제작물에 표시된 명의자는 권리자로 추정되나 반증이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A 씨는 사건 모형에 대해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이에 따라 법원의 추가 증거 제출 요구에 따라 A 씨가 제출한 사진 캡처 및 3D 모델링 자료 등의 자료는 컴퓨터 조작 영상 형태로서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A 씨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는 사건 모형에 대한 A 씨의 저작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A 씨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의 불이익을 부담해야 함.

② 2심 법원의 판단

a. 독창성 판단

<저작권법> 제3조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 영역 내에서 독창성을 가지며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지적 성과를 말함. 이때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핵심 개념은 독창성으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자신의 지적 노동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저작물을 완성한 것임을 의미하는 “독립성”과 저작물이 저작자의 개성적 표현 및 미적 선택, 지적 판단을 반영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창작성” 등 두 가지 요소를 만족해야 함.

본 안건에서 A 씨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건 모형은 민난(闽南) 지역에서 널리 전승된 민간 신앙인 ‘풍사야(风狮爷)’를 의인화한 형상으로서 해당 ‘풍사야’ 형상은 민간 예술의 공공적 소재이며 그 기본적인 조형 특성은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비록 A 씨가 ‘풍사야’ 형상에 일정한 스타일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이 비교적 단순하여 전통 ‘풍사야’ 형상과 구별될 정도의 현저한 식별성을 가진 독창적 표현을 형성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전체 조형은 기존 민간 예술 형상과 비교할 때 차이가 미미하여 저작자의 독특한 예술적 구상 및 심미적 선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건 모형은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독창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b. 저작권 귀속

본 안건에서 A 씨는 사건 모형의 저작권 귀속을 증명하기 위해 푸젠성 저작권국에서 등록된 저작권 등록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형식심사에 불과하여 사건 모형의 창작 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못함. 또한 피고들이 권리 충돌을 주장한 이후에도 A 씨는 사건 모형의 원본 설계도 또는

창작 초안을 제출하지 못하였음. 또한 A 씨가 제출한 자료는 컴퓨터 조작 영상 형태에 불과하여 이를 통해서도 해당 파일의 생성 시점 또는 사건 모형 창작 시점이 2016년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음. 나아가 A 씨는 푸젠성 찬저우시 중급인민법원(福建省泉州市中级人民法院)에서 진행된 다른 사건의 심리 기록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건 모형의 초안이 이미 분실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본 안건에서 A 씨가 사진 캡처 및 3D 모델링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창작 과정의 증거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입증은 한 것과 서로 모순됨. 따라서 A 씨는 사건 모형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건 모형의 저작권이 A 씨에게 귀속됨을 인정할 수 없음.

2) 저작권 침해 여부

저작권 침해 성립은 권리자가 유효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사건 모형은 독창성을 갖추지 못하여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음. 설사 사건 모형이 저작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저작권이 A 씨에게 귀속된다는 증거가 불충분함. 따라서 A 씨는 사건 모형에 대한 저작권을 향유하지 않음. 이에 따라 B 점포, C 회사, D 상무부, E 회사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3. 판례분석

1) 전통 민간예술 소재 저작물의 독창성 판단

중국 저작권법 제3조는 저작물을 문학·예술·과학 영역에서 독창성을 가지는 지적 성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독창성은 창작자의 독립적 창작성과 개성적 표현의 결합으로 이해됨. 따라서 저작물성 인정 여부는 단순한 외형적 차별성이 아니라 전통적 소재 위에서 창작자가 얼마나 새로운 표현 선택과 미적 판단을 구현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됨.

본문 판례에서 법원은 사건 모형이 ‘풍사야’라는 전통 민간 조형물에서 기원하고 있으며 해당 요소가 이미 공공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하였음. 따라서 해당 형상 자체는 누구에게도 독점적 권리가 인정될 수 없으며 보호 여부는 전통 요소와 구별되는 창작적 표현의 존재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언급하면서 A 씨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건 모형에 대해서는 그것이 ‘풍사야’ 형상에 일정한 스타일을 부여한 것에 그쳤고, 그 표현 방식이 비교적 단순하여 전통 ‘풍사야’ 형상과 구별될 정도의 현저한 식별성을 가진 독창적 표현을 형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음. 즉 사건 모형은 기존 민간 예술 형상과 비교할 때 전체 조형상의 차이가 미미하여 저작자의 독특한 예술적 구상과 심미적 선택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법원은 본문 판례에서 독창성 판단을 침해 판단에 선행하는 핵심 전제로 설정하였음. 저작권 침해 여부는 권리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분쟁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후 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의미를 상실하게 됨. 다만 2심 법원은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즐거운 아기 사자”와 사건 모형 사이의 손동작 및 소지 물품 차이도 함께 검토하여 실질적 유사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따라서 본문 판례는 권리 성립 단

계의 독창성 판단과 침해 단계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구별하여 이해해야 함.

2) 저작권 권리 충돌이 발생한 경우의 입증책임

본문 판례에서 핵심적인 법적 문제 중 하나는 저작권 권리 충돌의 발생 구조와 그에 따른 입증책임의 전환임. 중국 저작권법 체계에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 분쟁에서는 저작권 등록증, 서명, 계약 등 외형적 증거에 의해 권리자 추정이 형성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반증이 존재하는 경우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는 잠정적 추정에 해당함.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7조는 저작권 관련 증거로서 작품 원본, 초안, 합법 출판물, 저작권등록증, 인증기관 증명, 권리 취득 계약 등을 인정하면서 해당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와 상반되는 증거를 제시하면 권리자 추정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즉 저작권 등록은 권리 발생의 확정적 증거가 아니라 반증 가능성이 전제된 상대적 증명 구조에 해당함.

본문 판례에서 피고 측은 이러한 반증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하였음. 첫째, 제3자 황 모씨가 2016년 "해상 실크로드 문화 파생상품 창의 디자인대회"에서 사건 모형과 유사한 작품으로 은상을 수상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A 씨가 주장하는 사건 모형의 창작 시점 및 권리 귀속에 관하여 외부 공개 및 제3자 관여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료로 기능함. 둘째, 량 모씨 및 림 모씨 명의로 2022년 등록된 "즐거운 아기 사자" 작품의 존재는 피고 측이 A 씨의 등록증만으로 권리 귀속을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제출한 외부적 권리 주장 자료로 기능하였음. 다만 2심 법원은 해당 작품이 사건 모형보다 늦게 등록되었더라도 손동작과 소지 물품 등 구체적 표현에서 사건 모형과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였으므로 이를 권리 충돌의 직접적 근거로 과도하게 확대하여 이해해서는 안 됨.

권리 충돌 또는 반증이 제기되면 저작권 등록증에 기초한 권리자 추정은 약화되며 권리 주장은 더 이상 등록증만으로 권리 귀속을 인정받기 어렵고 원시 설계자료, 창작 초안, 창작 과정 자료 등으로 자신의 창작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강해야 함. 즉 기존에는 저작권등록증 또는 서명 등으로 인해 권리자가 추정되던 상태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더 이상 추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자신의 창작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됨. 이는 저작권 분쟁에서 "추정 중심 구조"가 "실질적 창작 증명 구조"로 전환되는 중요한 분기점임.

본문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원본 설계도, 창작 과정 자료, 권리 이전 계약 등 원시적 창작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제출된 자료는 컴퓨터 조작 영상 및 3D 모델링 화면 캡처 등 간접적 자료에 불과하여 창작 시점 및 생성 경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음. 특히 파일 생성 시점과 실제 창작 시점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한 디지털 타임스탬프만으로 2016년 창작 사실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또한 원고가 다른 사건에서 설계 도안이 이미 분실되었다고 진술한 사실과 본문 판례에서 해당 자료 존재를 전제로 주장한 점은 진술의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음. 이러한 사실은 증거 신뢰성을 저하시켜 권리 주장 전반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결국

본문 판례는 저작권 등록증에 의한 권리 추정이 제3자의 반증에 의해 부정될 수 있으며, 권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창작자는 원시 증거를 통해 창작 과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권리자는 저작권 등록증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작 과정과 권리 귀속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4. 시사점

본문의 판례는 저작권 등록증이 권리 귀속에 관한 초보적 증명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선행 발표, 수상 자료 등 권리 귀속에 관한 반증이 제출되는 경우 그 추정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줌. 나아가 권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 중심 구조가 아닌 실질적 창작 증명 구조로 입증 책임이 전환됨을 보여준 사례로서, 특히 법원이 저작권 등록증의 증명력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반증이 제출된 뒤에도 원고가 핵심 창작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점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문화 창의 상품 권리자가 증거를 관리하는 방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함.

■ 참고자료

판례
(2026)川18知民终1号